

더드림 기업자유예금 상품설명서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저축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**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**입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**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**.
- ◆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- ◆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, **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**.

구 분	내 용											
상품명	• 더드림 기업자유예금											
가입대상	• 개인사업자 및 법인											
가입금액 및 기간	• 제한없음											
가입채널	• 영업점 (영업점 방문하여 계좌개설 시, 개설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)											
이자지급시기	• 매월 이자지급 - 매월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결산기준일 익일에 원금에 가산 - 최초예금일 또는 지난 원가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며,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금리 적용											
예금자 보호여부 [해당]		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1억원까지" (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										
제한 사항	•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 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•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, 출금, 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• 통장이 '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'에서 정의한 피해의 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 될 경우 이체, 송금지연,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											
이자율 (26.06.16 현재)	•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이율 적용 • 본 상품은 변동금리이므로, 이율이 변동되는 경우 변경일부터 변경된 이율이 즉시 적용됩니다. 또한 변경일 이전 가입한 계좌를 포함하여 전 계좌에 적용됩니다. <table><tr><th>(연,세전)</th><th>3개월미만</th><th>6개월미만</th><th>6개월이상</th></tr><tr><td>기본이율</td><td>3.30%</td><td>3.30%</td><td>3.30%</td></tr></table>				(연,세전)	3개월미만	6개월미만	6개월이상	기본이율	3.30%	3.30%	3.30%
(연,세전)	3개월미만	6개월미만	6개월이상									
기본이율	3.30%	3.30%	3.30%									
원천징수	•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(15.4%*)을 공제하여 지급 * 개인) 이자소득의 14% (소득세) + 이자소득세의 10% (지방소득세 1.4%)를 징수 * 법인) 이자소득의 14% (법인세) + 이자소득세의 10% (법인지방소득세 1.4%)를 징수											

구 분	내 용
위법계약 해지권	-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 -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
자료열람요구권	-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열람의 목적,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 -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,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,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. - 저축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
휴면예금 및 출연	-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한 예금은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휴면예금이 되어 서민금융진흥원(국번없이 1397)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. -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(www.sleepmoney.or.kr)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.
거래중지	- 거래중지계좌 편입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거래중지계좌로 편입되어 입출금, 잔액조회, 이관 등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거래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 및 금융거래목적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. - 예금잔액이 10,000원 미만이고,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- 예금잔액이 10,000원 이상 50,000원 미만이고, 2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- 예금잔액이 50,000원 이상 100,000원 미만이고, 3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
연계·제휴 서비스	☒ 해당사항 없음 ☐ 해당사항 있음

[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]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(1544-670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daolsb.com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
본인은 다올저축은행과 예금거래를 함에 있어 **상품설명서를 제공받았으며**,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**예금거래의 주요내용, 거래조건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.**

년 월 일 예금주: (서명/인) 대리인: (서명/인)